

의안번호	2204910
의 퇴 인	김소희 의원
회 답 일	2025.1. 6.
추 계 번호	24B45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17~803억원, 2029년 1,498~1,95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210~8,090억원(연평균 1,242~1,618억원)으로 추계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되, 법률안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하반기만 산출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617	1,300	1,366	1,429	1,498	6,210	1,242
시나리오2	803	1,694	1,780	1,862	1,951	8,090	1,618

주: 1. 본 추계서는 사업대상자 및 지급기간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별표1	구분		피보험기간						의무규정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별표1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별표1) 개정안은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임
 -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사업대상자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시점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개정안은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임
 - － 개정안은 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40일에서 270일로,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임
 - －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간주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4.11.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표 2] 고용보험법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현행법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4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70일
개정안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정급여일수의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액으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지급단가 및 기간을 곱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개정안에 규정된 별표1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구분하여 산출
 - (그룹1) 50세 미만(장애인 제외)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그룹2)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표 3]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실업자 수(천명)		1,108	1,037	833	787
그룹1		37,537	38,559	33,822	33,304
그룹2		106,989	122,831	119,939	129,167

주: 구직급여(연장포함) 수급자 기준이며,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 국회예산정책처 실업자 수 전망을 토대로 산출한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2023년 기준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2023년 기준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 및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2025~2029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른 수급자 수(추정치):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실업자 수 전망치(A, 천명)		837	849	860	867	876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명)	그룹1	35,420	35,946	35,946	36,406	36,693
	그룹2	137,373	139,413	141,199	142,312	143,730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단가) 2023년 기준 추가재정소요 산출대상자의 구직급여일액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5] 그룹별 평균지급일액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그룹1	62,899	62,975	63,091	63,292
그룹2	62,525	62,627	62,727	62,970

주: 구직급여(연장포함) 수급자 기준이며,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 (지급기간)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제16557호의 시행에 따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대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확대되었으므로, 본 추계서는 2019년 대비 소정급여일수의 변화를 적용하여 산출

[표 6]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1년 7월~2019년 9월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019년 10월 이후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직급여의 평균지급일수는 경기변동 등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므로 2019년과 2020년(실업률 최고) 및 2023년(실업률 최저)과의 평균지급일수의 차이를 산출

※ 시나리오1 : 2019년 대비 2020년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차이(그룹1 13일, 그룹2 14일)를 적용하여 산출

※ 시나리오2 : 2019년 대비 2023년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차이(그룹1 9일, 그룹2 11일)를 적용하여 산출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개별 수급자의 요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평균 지급일수 등이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추가 재정소요가 변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7] 그룹별 평균지급일수

(단위: 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그룹1	112	125	130	130	121
그룹2	146	160	159	159	157

주: 구직급여(연장포함) 수급자 기준이며,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표 8]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나리오1						
그룹1	사업대상자 수(A1, 명)	35,420	35,946	36,406	36,693	37,059
	1인당 지급단가(B1, 만원)	6.8	7.0	7.3	7.6	7.9
	1인당 지급기간(C1, 일)	13	13	13	13	13
	소계(D1=A1×B1×C1, 억원)	312	329	345	361	378
그룹2	사업대상자 수(A2, 명)	137,373	139,413	141,199	142,312	143,730
	1인당 지급단가(B2, 만원)	6.7	7.0	7.3	7.5	7.8
	1인당 지급기간(C2, 일)	14	14	14	14	14
	소계(D2=A2×B2×C2, 억원)	1,295	1,365	1,435	1,501	1,573
시나리오2						
그룹1	사업대상자 수(A1, 명)	35,420	35,946	36,406	36,693	37,059
	1인당 지급단가(B1, 만원)	6.8	7.0	7.3	7.6	7.9
	1인당 지급기간(C3, 일)	9	9	9	9	9
	소계(D3=A1×B1×C3, 억원)	216	227	239	250	262
그룹2	사업대상자 수(A2, 명)	137,373	139,413	141,199	142,312	143,730
	1인당 지급단가(B2, 만원)	6.7	7.0	7.3	7.5	7.8
	1인당 지급기간(C4, 일)	11	11	11	11	11
	소계(D4=A2×B2×C4, 억원)	1,018	1,073	1,127	1,179	1,236
합계(E=D1+D2)		1,607	1,694	1,780	1,862	1,951
합계(F=D3+D4)		1,234	1,300	1,366	1,429	1,498

주: 1. 본 주계서는 사업대상자 및 지급기간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전체 수급자에 대한 자료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17~803억원, 2029년 1,498~1,95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210~8,090억원(연평균 1,242~1,618억원)으로 추계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되, 법률안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하반기만 산출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시나리오1	803	1,694	1,780	1,862	1,951	8,090
시나리오2	617	1,300	1,366	1,429	1,498	6,210

주: 1. 본 추계서는 사업대상자 및 지급기간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전체 수급자에 대한 자료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지급일수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개별 수급자의 요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